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52
------	-----

제출연월일 : 2006. 1. 12.

제 출 자 : 고성군수

1. 개정이유

1998년 1월부터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해 왔으나 전자입찰제의 도입으로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입찰참가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삭제함. (안 별표1)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 2005-650호(2005. 12. 20. ~ 2006. 1. 9.)
- 의견 및 제출사항 없음

나. 관련법령

-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3과 - 481(2005.7.29)호
- 행정자치부 교부세팀 - 1606(2005.10.12)호
- 경상남도 회계과 - 18738(2005.10.13)호
- 경상남도 회계과 - 22395(2005.12.05)호

4. 본문 : 덧붙임과 같음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인·허가,신고,신청,등록,확인등) 중 제8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대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명) 1. ~ 9. (생 략)				(증명) 1. ~ 9.(현행과 같음)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 확인등) 1. ~ 7. (생 략)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 확인등) 1. ~ 7. (현행과 같음)			
8. 회계관계 (1) 입찰참가신청(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등의 경쟁 입찰)	1건	10,000원		<삭 제>			
9. ~ 10. (생 략)				9. ~ 10. (현행과 같음)			